### 

**국제라이온스협회**

**표준**

**복합지구 헌장 및 부칙**

### 2023-2024

**국제라이온스협회**

**목적**

*봉사단체로서 라이온스 클럽을 조직, 관리하고 차터를 발급한다.*

*라이온스 클럽 활동사항을 조정하고 클럽운영을 표준화한다.*

*세계 인류 상호간의 이해심을 배양하고 증진시킨다.*

*건전한 국가관과 시민의식을 고취시킨다.*

*지역사회의 생활개선, 사회복지, 공덕심 함양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다.*

*우의와 협력 그리고 상호이해로 클럽 간의 유대를 돈독히 한다.*

*정당과 종교문제를 제외한 일반인의 관심사인 모든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지역사회의 숨은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며 각 분야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덕심을 향상시킨다.*

**소망서**

*지역사회와 인도주의 봉사 부문에서 세계적 지도자를 목표로 한다.*

**임무서**

### *라이온스 클럽, 자원봉사자 및 파트너들이 인도주의 봉사사업 및 교부금을 통해 건강과 복지를 향상하고 지역사회를 강화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도록 조력하는 동시에 평화와 국제 이해를 증진시킨다.*

**표준 복합지구 헌장**

**제1조 – 명칭** 6

**제2조 – 목적** 6

**제3조 – 회원** 6

**제4조 – 문장, 색채, 슬로건 및 모토**

1 항 – 문장 6

2 항 – 명칭 및 문장 사용 7

3 항 – 색채 7

4 항 – 슬로건 7

5 항 – 모토 7

**제5조 – 주권**  7

**제6조 - 임원 및 총재협의회**

1 항 – 구성 7

2 항 – 임원 7

3 항 – 권한 7

4 항 – 해임 8

**제7조 - 복합지구 대회**

1 항 – 개최 일시 및 장소 8

2 항 – 클럽 대의원 수 산출방식 8

3 항 – 정족수 8

4 항 – 임시 대회 8

**제8조 - 복합지구 분쟁해결 절차** 9

**제9조 – 개정**

1 항 – 개정 절차 9

2 항 – 자동 개정 9

3 항 – 공고 9

4 항 – 발효일 9

**부칙**

**제1조 - 제3부회장 및 국제이사 후보 지명과 추천**

1 항 – 추천절차 9

2 항 – 지명 10

3 항 – 지지 연설 10

4 항 – 투표 10

5 항 – 정지구의 추천 10

6 항 – 추천증명서 10

7 항 – 유효성 10

**제2조 - 복합지구 의장 임명** 10

**제3조 - 복합지구 총재협의회 및 위원회의 임무**

1 항 – 복합지구 총재협의회 10

2 항 – 복합지구 총재협의회 의장 11

3 항 – 복합지구 사무총장-재무총장 11

4 항 – 복합지구 의전위원장 12

5 항 – 글로벌 봉사팀 (GST) 복합지구 코디네이터 12

6 항 – 글로벌 회원증강팀 (GMT) 복합지구 코디네이터 13

7 항 – 글로벌 지도력개발팀 (GLT) 복합지구 코디네이터 13

8 항 – 복합지구 마케팅위원장 14

9 항 - LCIF 복합지구 코디네이터 14

10항 - 레오/레오-라이온 복합지구 연락원(선택 사항) 15

**제4조 - 복합지구 위원회**

1 항 – 자격증명위원회 16

2 항 – 복합지구 글로벌 액션팀 (GAT) 16

3 항 – 복합지구 대회위원회 16

4 항 – 기타 복합지구 위원회 16

**제5조 – 회의**

1 항 – 복합지구 회의 16

2 항– 대체 회의 형식 17

3 항 – 정족수 17

4 항 – 우편으로 처리되는 업무 17

**제6조 – 복합지구 대회**

1 항 – 대회 개최지 선정 17

2 항 – 공식통고 17

3 항 – 개최지 변경 17

4 항 – 임원 17

5 항 - 대회 진행순서 17

6 항 - 의시규칙 및 절차 17

7 항 - 운영요원 18

8 항 - 공식보고서 18

9 항 - 정지구대회 18

**제7조 복합지구 대회비**

1 항 – 대회 운영비 부과 18

2 항 – 잔여 운영비 18

3 항 – 등록비 징수 18

**제8조 - 복합지구 운영비**

1 항 - 복합지구 수입 19

2 항 – 잔여 운영비 19

**제9조 – 기타**

1 항 - 보수 19

2 항 - 회계연도 19

3 항 - 감사 19

**제10조 – 개정**

1 항 – 개정 절차 19

2 항 – 자동 개정 19

3 항 – 공고 20

4 항 – 발효일 20

**부록 A - 의사규칙**

\_\_\_\_\_\_ 복합지구 대회 21

### 표준 복합지구 헌장

**제1조**

**명칭**

본 조직의 명칭은 라이온스 \_\_\_\_복합지구 (이하 "복합지구"라 칭함)이다.

**제2조**

**목적**

본 복합지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복합지구 내에서 국제협회의 목적을 추진할 행정조직을 제공한다.
2. 세계 인류의 상호 간의 이해심을 배양하고 증진한다.
3. 건전한 국가관과 시민의식을 고취한다.
4. 지역사회 생활개선, 사회복지, 공덕심 함양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다.
5. 우의와 협력 그리고 상호이해로 클럽 간의 유대를 돈독히 한다.
6. 정당과 종교문제를 제외한 일반인의 관심사인 모든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7. 지역사회의 숨은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며 각 분야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덕심을 향상시킨다.

**제3조**

**회원**

본 조직의 회원은 국제협회에서 차터를 받은 본 복합지구 내의 모든 라이온스 클럽이다.

본 복합지구는 복합지구 대회에서 채택하고 국제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계선에 속한 \_\_\_\_\_\_\_\_\_정지구들로 구성된다.

**제4조**

**문장, 색채, 슬로건 및 모토**

1항. **문장**. 본 협회 및 차터를 받은 클럽의 문장은 다음과 같다:

A blue and yellow logo with lions heads and a letter

Description automatically generated

2항. **명칭 및 문장 사용.** 협회의 명칭, 문장, 기타 로고의 사용은 본 부칙에서 수시로 개정하는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사용한다.

3항. **색채**. 본 협회와 차터를 받은 클럽을 상징하는 색은 보라색과 금색이다.

4항. **슬로건**. 협회의 슬로건은: “자유, 지성, 우리 국가의 안전(Liberty, Intelligence, Our Nation’s Safety)”이다.

5항. **모토**. 협회의 모토는‘We Serve(우리는 봉사한다)이다.

**제5조**

**주권**

국제 헌장 및 부칙, 국제이사회 방침서와 상충되게 개정하지 않는 한, 복합지구는 표준 복합지구 헌장 및 부칙의 통제를 받는다. 복합지구 헌장 및 부칙과 국제 헌장 및 부칙에 규정된 조항들 사이에 논쟁이나 모순이 발생할 경우, 국제 헌장 및 부칙의 통제를 받는다.

**제6조**

**임원 및 총재협의회**

1항. **구성**. 복합지구 내의 모든 지구총재로 구성되는 총재협의회를 두며, 복합지구 의장으로 활동할 현총재 또는 전총재 1명을 포함시킨다. 본 복합지구 임원들은 총재협의회의 구성원이 된다. 복합지구의장을 포함한 총재협의회의 각 구성원은 총재협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각 사안에 대해 1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복합지구 의장의 임기는 1년이며, 재임할 수 없다. (참고: 국제 부칙 제8조 4항에 의거, 복합지구는 복합지구 헌장 및 부칙에 규정하여 다른 라이온들을 총재협의회 구성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2항. **임원**. 총재협의회의 임원은 의장, 부의장, 사무총장, 재무총장, 총재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임원들이며, 모두 총재협의회에서 매년 선출한다.

3항. **권한**. 국제협회의 정관과 국제 헌장 및 부칙의 조항, 국제이사회에서 부여한 권한, 동 국제이사회의 방침과 의결에 모순되거나 상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총재협의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1. 총재협의회의 모든 임원들과 대리인, 복합지구의 모든 위원회와 복합지구 대회의 관할권과 통제권을 갖는다.
  2. 복합지구의 자산, 업무, 기금을 관리하고 통제한다.
  3. 복합지구 대회 및 모든 복합지구 회의의 모든 단계를 관할, 감독, 통제한다.
  4. 국제이사회 방침서 및 동 이사회에서 규정한 절차규칙 하에 승인된 경우, 모든 정지구(들), 라이온스 클럽, 라이온스 클럽회원, 복합지구에서 제기하는 헌장관련 항의를 듣고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갖는다. 총재협의회의 그러한 모든 결정은 동 국제이사회의 검토와 재결을 받아야 한다.
  5. 복합지구, 복합지구의 위원회, 복합지구 대회의 모든 예산 관련 문제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어떠한 회계연도에도 불균형한 예산이나 적자를 초래하는 채무관계를 승인하거나 만들어서는 안 된다.

4항. **해임**. 총재협의회 과반수의 요청으로, 복합지구 의장의 해임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 총재협의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복합지구 의장이 임명되었든 선출되었든 방식에 관계없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복합지구 의장은 총재협의회 전 구성원 2/3 찬성으로 해임될 수 있다.

**제7조**

**복합지구 대회**

1항. **개최 일시 및 장소**. 복합지구 대회는 매년 국제대회 이전에 개최해야 하며, 복합지구의 전년도 대회에서 대의원들이 선택한 장소에서 총재협의회가 확정한 일시에 개최한다.

2항. **클럽 대의원 수 산출방식**. 협회와 소속 지구 및 복합지구에서 굿 스탠딩 상태인 클럽은 대회 개최 전월 1일자 국제협회 기록에 준해 클럽에 입회한지 1년 1일 이상 된 회원 10명 당, 그리고 나머지가 과반수 이상일 때 복합지구 대회에 대의원 1명과 대체대의원 1명을 파견할 권한을 갖는다. 본 항에서 언급한 과반수는 회원 5명 이상이다. 직접 출석하여 자격을 증명한 대의원은 각 대회에서 선출할 각 임원에 1표, 상정된 각 안건에 1표씩 투표할 자격을 갖는다. 본 헌장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모든 안건에 대해 투표한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대회의 결의가 된다. 모든 유자격 대의원은 지구 내의 굿 스탠딩 라이온스 클럽의 굿 스탠딩 회원이어야 한다.

자격증명 마감일 15일 이전까지 체납된 회비를 완납해야 굿 스탠딩이 유지되며, 자격증명 마감시간은 각 대회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3항. **정족수**. 정지구 또는 복합지구 대회의 모든 회의의 정족수는 참석 대의원의 과반수이다.

4항. **임시 대회**. 복합지구 클럽들의 임시 대회는 총재협의회 2/3의 찬성으로 이들이 정한 일시 및 장소에서 소집할 수 있다; 단, 해당 임시 대회는 국제대회 개최 15일 이전에 종료되어야 한다. 복합지구 사무총장은 임시 대회 개최일 30일 이전에 시간, 장소, 목적을 명시한 임시 대회의 서면 공고를 복합지구 내 각 클럽에 제공해야 한다.

**제8조**

**복합지구 분쟁해결 절차**

회원, 클럽 경계선, 복합지구 헌장 및 부칙 또는 복합지구 총재협의회에서 수시로 채택하는 방침이나 절차의 해석, 위반, 적용, 그 외 기타 방법을 통해 만족스럽게 해결될 수 없는 라이온스 복합지구 내부 문제와 관련된 모든 분쟁 또는 청구는 국제이사회가 제정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제9조**

**개정**

1항. **개정 절차**. 본 헌장은 헌장 및 부칙위원회에서 상정한 결의안으로 복합지구 대회에서만 개정할 수 있으며, 투표자의 2/3의 찬성으로 채택된다.

2항. **자동 개정**. 국제 헌장 및 부칙 개정안이 국제대회에서 통과되면, 본 복합지구 헌장 및 부칙에 영향을 주는 모든 개정내용은 대회 종료 시 본 헌장 및 부칙에서 자동으로 개정된다.

3항. **공고**. 연차대회 30일 전까지 개정안이 동 대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이라는 공고와 함께, 개정안을 정기 우편이나 전자 방식으로 각 클럽에 공표하지 않는 한, 어떠한 개정안도 공표하거나 표결할 수 없다.

4항. **발효일**. 개정안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각 개정안은 이를 채택한 대회 종료 시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제1조**

**제3부회장 및 국제이사 후보**

**지명과 추천**

1항. **추천절차**. 국제 헌장 및 부칙 조항에 따라, 국제이사 또는 제3부회장 후보자로서 복합지구 대회에서 추천을 구하는 복합지구 내 모든 라이온스 클럽 회원은:

* 1. 추천을 구하는 서면신청서를 해당 추천 사안이 표결에 부쳐질 (정지구 또는 복합지구) 대회 개최 30일 이전까지 복합지구 사무총장-재무총장에게 (우편 또는 직접) 전달해야 한다.
  2. 동 신청서와 함께 국제 헌장 및 부칙에서 정한 해당 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시켰다는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2항. **지명**. 제출된 각 신청서는 복합지구 의장과 사무총장-재무총장이 해당 대회의 지명위원회에 즉시 전달해야 한다. 지명위원회는 각 예비 후보자로부터 신청서 및 자격요건 추가 증빙을 입수하여 검토하고 확인해야 하며, 동 절차 및 헌장상의 자격요건을 충족시킨 각 예비 후보자의 이름을 해당 대회에서 지명해야 한다.

3항. **지지 연설**. 추천된 각 후보자는 3분 이내의 지지 연설 1회를 할 자격을 갖는다.

4항. **투표**. 추천을 구하는 후보자가 1명이라서 구두투표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에 대한 투표는 비밀 서면 투표로 실시해야 한다.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복합지구 대회의 후보자로 추천(선출)되었음을 선언한다. 동수득표의 경우 또는 한 후보자가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한 경우, 앞선 투표에서 최다 득표한 2명의 후보자에 대해 1명이 과반수를 득표할 때까지 투표를 계속해야 한다.

5항. **정지구의 추천**. 복합지구 대회에서 추천을 구하는 모든 후보자는 먼저 소속 정지구의 추천을 확보해야 한다.

6항. **추천증명서**. 복합지구 대회의 추천증명서는 국제 헌장 및 부칙에 규정된 요건에 의거하여, 지정된 복합지구 임원들이 국제협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7항. **유효성**. 본 복합지구 내 모든 라이온스 클럽 회원의 모든 후보자 추천은 본 항의 규정을 충족시킬 때까지 유효하지 않다.

**제2조**

**복합지구 의장 임명**

복합지구 의장은 복합지구의 지구총재들이 임명해야 하며, 해당 의장은 취임할 때 현 또는 전총재여야 한다. 복합지구 의장의 임기는 1년이며, 재임할 수 없다. 복합지구 의장의 임기 동안 재직할 복합지구 내 지구총재들의 회의는 복합지구 의장 선출을 목적으로 하여 복합지구 연차대회 이후에 소집하되 국제대회 종료 후 30일 이내로 해야 한다. 복합지구 내 굿 스탠딩 클럽의 굿 스탠딩 클럽회원을 복합지구 의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동 회의 참석자들의 의무이다.

**제3조**

**복합지구 총재협의회 및**

**위원회의 임무**

1항. **복합지구 총재협의회**.

복합지구 총재협의회가 해야 할 일은:

* 1. 복합지구 대회 운영비와 관련된 모든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서를 승인한다.
  2. 복합지구 기금을 예치할 곳을 지정한다.
  3. 복합지구 사무총장-재무총장의 보증채권 금액을 정하고 동 채권을 발행할 보증회사를 승인한다.
  4. 복합지구 사무 겸 재무총장으로부터 재정보고서(연 2 회 혹은 그 이상)를 접수하고 필요할 경우 연도 말에 회계장부 및 구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2항. **복합지구 총재협의회 의장**. 복합지구 의장은 복합지구의 관리 책임자이다. 모든 행위는 복합지구 총재협의회의 권한, 지시, 감독의 대상이다.

복합지구 의장은 총재협의회와 협력하여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 + 1. 본 협회의 목적을 추진한다.
    2. 글로벌 액션팀 복합지구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복합지구 전체에서 회원증강, 지도력개발, 인도주의 봉사를 관리하고 증진한다.
       1. GST 복합지구 코디네이터, GMT 복합지구 코디네이터, GLT 복합지구 코디네이터의 직에 자격을 갖춘 라이온 지도자를 선임한다.
       2. 복합지구 글로벌 액션팀이 수립한 계획을 논의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한다.
       3. 지역지도자 및 지구 글로벌 액션팀과 협력한다.
    3. 협회 및 복합지구 방침, 프로그램, 행사에 관한 정보 전달을 지원한다.
    4. 총재협의회에서 수립한 복합지구의 목표와 장기 계획을 문서화하여 활용하게 한다.
    5. 회의를 개최하고, 총재협의회 회의에서 논의를 진행한다.
    6. 복합지구 연차대회 계획을 추진한다.
    7. 지구총재 간의 화합과 단결을 창출 및 촉진시키고자 하는 국제이사회나 총재협의회의 노력을 지원한다.
    8. 보고서 제출, 및 복합지구 헌장 및 부칙에 명시된 임무를 수행한다.
    9. 복합지구 총재협의회에서 부여한 기타 관리 임무를 수행한다.
    10. 임기 만료 시, 모든 복합지구 회계, 기금, 기록을 후임자에게 적시에 인계한다.

3항. **복합지구 사무총장-재무총장**. 총재협의회의 감독과 지시 하에 복합지구 사무총장-재무총장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총재협의회 회의의 모든 회의록을 정확히 기록하여 각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총재협의회 모든 구성원과 국제협회 사무국에 사본을 제공한다.
2. 총재협의회가 복합지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돕고, 헌장 및 부칙에 명시되거나 암시된 또는 총재협의회가 수시로 부여하는 기타 임무를 수행한다.
3. 정지구 사무총장-재무총장이 납부해야 하는 모든 회비와 세금을 수령하고 적절한 영수증을 발급, 총재협의회가 지정한 은행에 예치, 총재협의회의 감독과 통제 하에, 본인이 서명하고 복합지구 의장이나 기타 정식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협의회 구성원이 공동서명한 수표로 지출한다.
4. 정확한 회계장부와 모든 총재협의회 및 복합지구 회의 회의록을 보관하고, 총재협의회 구성원이나 복합지구 내의 클럽(또는 정식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이 온당한 시간에 적절한 목적으로 열람하는 것을 허용한다.
5. 총재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직무 수행을 위한 보증금과 보증인을 제시한다.
6. 임기를 마치면, 복합지구의 일반 및/또는 회계장부, 기금, 기록들을 후임자에게 적시에 인계한다.
7. 복합지구 사무총장과 재무총장을 별도의 직책으로 둘 경우, 여기의 임무는 직무의 성격에 따라 각 임원이 수행한다.

4항. **복합지구 의전위원장**. 총재협의회가 매년 복합지구 의전위원장을 임명한다. 협의회의장의 감독 하에 의전위원장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내빈이 참석하는 모든 행사에서, 협회의 공식 의전서열에 준한 좌석배치도를 제공; 구두 소개도 동일한 기준임을 명확히 한다. 모든 행사의 복장규정을 명확히 제시한다.
  2. 적절한 공항(또는 다른 도착지) 인사말 준비; 호텔이나 기타 숙박시설까지 적합한 교통편 마련; 호텔 객실을 사전 점검하여 적합한지 확인; 적절한 서비스(꽃, 과일 등)를 제공한다.
  3. 예정된 각 행사에 방문자들을 위한 적절한 에스코트를 준비한다.
  4. 방문자의 일정이 허용되는 대로, 지방 정부 지도자(또는 지역적으로 가능하다면 지역 및/또는 국가 지도자) 예방을 준비한다.
  5. 필요 시, TV, 라디오, 인쇄 매체 등 홍보 미디어 노출을 편성한다.
  6. 호텔 출발 및 공항(또는 다른 출발장소)까지의 교통편을 준비한다.

5항. **글로벌 봉사팀(GST) 복합지구 코디네이터**. GST 복합지구 코디네이터는 복합지구 글로벌 액션팀(GAT)의 멤버이다.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봉사 목표를 향한 진척 상황을 감독할 연간 복합지구 실천 계획을 개발하고 실행한다. 지구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구를 지원하고 동기를 부여한다.
2. GMT, GLT 복합지구 코디네이터들 및 글로벌 액션팀 복합지구위원장 (복합지구 의장)과 협력하여 지도력 개발, 회원증강, 인도주의 봉사 확장에 초점을 맞춘 계획을 더욱 발전시킨다.
3. 복합지구 내 라이온과 레오들에게 소속감과 자부심을 심어 줄 지역사회 봉사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4. GMT, GLT와 협력하여 지구에 회원유지 전략을 제공한다.
5. GST 지구 코디네이터와 정기적으로 소통하여 협회와 재단 프로그램, 파트너십, 교부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6. 국제협회 사업을 위해 시행되는 현지 봉사 프로젝트에 대해 전문가 역할을 수행한다.
7. GST 지구 코디네이터가 레오의 통합 및 지도력 개발을 포함한 다세대 참가자들의 관심을 끄는 봉사 프로젝트를 촉진하도록 권장한다.
8. LCIF 자원 활용과 기금모금 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해 복합지구/지구 차원에서 LCIF 코디네이터와의 공동작업을 늘려 간다.
9. LCIF 복합지구 코디네이터와 함께 복합지구에 제공된 LCIF 교부금 사업을 감독한다.
10. 복합지구의 옹호활동을 주도하여 지역사회 인식 증진/교육, 입법/공공정책, 행사, 파트너십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6항. **글로벌 회원증강팀(GMT) 복합지구 코디네이터**. GMT 복합지구 코디네이터는 복합지구 글로벌액션팀(GAT)의 멤버이다.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GLT, GST 복합지구 코디네이터들 및 글로벌 액션팀 복합지구위원장 (복합지구의장)과 협력하여 지도력 개발, 회원증강, 인도주의 봉사 확장에 초점을 맞춘 계획을 더욱 발전시킨다.
2. 복합지구의 연간 회원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3. GMT 지구 코디네이터와 정기적으로 소통하여 제공되고 있는 회원 프로그램과 자료에 대해 알린다.
4. 회원증강 목표를 향한 각 지구의 진척 상황을 감독한다. 지구가 목표를 달성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지원한다.
5. GMT 지구 코디네이터들이 글로벌 액션팀 계획에 다양한 사람들을 참여시키도록 장려한다.
6. 국제협회가 제공하는 장래 회원들에게 신속히 연락을 취하고 회원에 관한 현황 보고서를 제공한다.
7. 회원개발 활동을 위해 국제협회에서 제공하는 복합지구 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료하고 신청서를 제출한다.
8. GLT, GST 복합지구 코디네이터와 협력하여, 지구에 회원유지 전략을 제공한다.
9. 지구들이 특성화 클럽을 조직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7항. **글로벌 지도력개발팀(GLT) 복합지구 코디네이터**.GLT 복합지구 코디네이터는 복합지구 글로벌 액션팀(GAT)의 멤버이다.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GMT, GST 복합지구 코디네이터들 및 글로벌 액션팀 복합지구위원장 (복합지구의장)과 협력하여 지도력 개발, 회원증강, 인도주의 봉사 확장에 초점을 맞춘 계획을 더욱 발전시킨다.
2. 복합지구의 연간 지도력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3. GLT 지구 코디네이터와 정기적으로 소통하여 제공되고 있는 지도력개발 프로그램과 자료에 대해 알린다.
4. 지도력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GLT 지구 코디네이터, 지대위원장, 클럽 지도부에 지속적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과정을 감독한다.
5. GLT 지구 코디네이터들이 글로벌 액션팀 계획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6. 협회의 모든 차원에서 참여를 장려할 지도력 개발 기회를 홍보한다.
7. 국제협회와 협력하여 강사 주도식, 웹 기반 연수를 준비하고 진행한다.
8. GMT, GST 복합지구 코디네이터들과 협력하여 지구에 회원유지 전략을 제공한다.
9. 글로벌 액션팀 계획에 다양한 사람들을 참여를 독려한다.
10. 봉사, 회원증강, 지도력 개발 기회에 참여할 잠재적, 새로운 지도자를 발굴한다.
11. 지도력개발 활동을 위해 국제협회에서 제공하는 복합지구 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료하고 신청서를 제출한다.

8항. **복합지구 마케팅위원장.** 마케팅 및 홍보 노력에 책임이 있으며 직접적으로 글로벌 액션팀을 지원한다.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글로벌 액션팀과 직접적으로 협력하여 마케팅 채널을 통해 소개된 잠재 회원들을 적절한 지구 및 클럽과 연결시킨다.

(b) 총재협의회와 협력하여 대규모 마케팅 행사, 프로그램, 사업 기회를 파악하고 지원한다.

(c) 복합지구 의장과 함께 마케팅 교부금을 신청한다.

~~(d) 복합지구 의장과 함께 지구의 라이온스 국제 마케팅상 신청서를 검토하고, 국제협회의 심사를 위해 제출한다.~~

(d) 직접 또는 현존하는 복합지구 마케팅위원회를 통해 소셜 미디어 채널 및 웹사이트를 관리한다.

(e) 소셜 미디어를 통해 복합지구 성공 사례를 공유한다.

(f) 글로벌 브랜드 지침을 숙지하고 지식을 쌓는다.

a. 모든 복합지구 활동에서 글로벌 브랜드 자산을 적절하게 지속적으로 사용한다.

b. 사례 및 홍보물 제작 시 승인된 브랜드 견본을 사용하도록 지원한다.

(h) 국제협회와 재단의 선행 및 보도 가치가 있는 사례를 라이온, 언론인, 소셜 미디어 채널, 외부에 알린다.

9항. **LCIF 복합지구 코디네이터**.LCIF 복합지구 코디네이터는 국제재단 이사장과 국제회장이 3년 임기로 임명한다. 국제재단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국제재단 이사장과 국제재단 이사회에 직접 보고한다.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각 지구에서 LCIF 지구 코디네이터로 3년간 봉사할 라이온을 찾아 연수시킨다.
2. 국제재단 프로그램에 대해 숙지하고 국제재단이 제공하는 다양한 교부금 및 프로젝트에 대해 복합지구 내 라이온들을 교육시킨다. 필요한 경우, 국제재단에 교부금 신청서 제출 시 지구총재에 조력한다.
3. 국제재단의 활동을 복합지구 간행물 및 행사를 통해 알리고 대중에게도 홍보한다.
4. 복합지구 내에서 국제재단 기금으로 수행되는 사업을 홍보하고 이들 사업이 규정에 따라 시행되도록 확인한다.
5. 복합지구 내 모든 라이온들이 국제재단에 기부하도록 격려하고, 기부에 대한 수상 프로그램을 홍보한다.
6. 국제재단을 지원할 수 있는 주요 기부자, 현지 재단, 기업, 사업체를 파악하여, 적절한 경우 기부 요청 절차에 참여한다.
7. 필요 시 국제재단 기금, MJF 신청서, 기타 기부 정보를 제출하는데 조력한다.
8. 소속 지역 국제재단 이사에게 분기별로 보고한다.

10항. **레오/레오-라이온 복합지구 연락원(선택 사항)**

총재협의회는 복합지구 레오 위원장과 상의하여 레오 또는 레오-라이온을 1년 동안 투표권이 없는 공식 임원으로 활동하도록 임명할 수 있다. 레오/레오-라이온 복합지구 연락원은 레오 및 레오-라이온의 관심사와 견해를 대변하고, 레오와 라이온 간의 의사소통 및 관계 유지를 촉진시킨다. 레오 복합지구가 있는 지역에서는, 전 또는 현 레오 복합지구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인 레오 또는 레오-라이온이 본 직책을 담당한다. 레오 복합지구가 없는 지역에서는, 전 또는 현 레오 지구 회장인 레오 또는 레오-라이온이 본 직책을 담당한다. 레오 지구가 없는 지역에서는, 전 또는 현 레오 클럽 회장인 레오 또는 레오-라이온이 본 직책을 담당한다.

총재협의회에서 청년들의 의견이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지구 상임위원회에 레오/레오-라이온 복합지구 연락원을 배치한다. 복합지구 연락원은 1년 동안 동일한 위원회에서 활동하거나, 또는 총재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사이에서 이동할 수 있다.

레오 또는 레오-라이온 복합지구 연락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 - * 1. 복합지구 내 레오와 라이온 간의 의사소통 촉진
        2. 복합지구 임원 및 배정된 위원회의 자원으로서 활동
        3. 레오클럽, 레오-라이온 프로그램, 청년 참여 기회 홍보를 위해 복합지구 레오 위원장과 협력
        4. 복합지구 레오 위원장의 레오 복합지구 임원 연수 실시 지원
        5. 라이온스 복합지구 활동 중 레오 및 레오-라이온의 지도자 또는 지도력 개발 연수 기회 옹호
        6. 복합지구 내 레오의 라이온스 회원 프로그램 기회 탐색 지원 및 담당자로 활동
        7. 레오 복합지구 회장, 레오/레오-라이온 지구임원회 연락원(임명된 경우), 레오-라이온 국제이사회 연락원, 레오 클럽 프로그램 고문 패널 헌장지역 대표와 연락하며 청년 관련 사업 협력
        8. 라이온스 복합지구 연차대회, 포럼 행사, 연수회에서 레오 및 레오-라이온 통합 및 계획 지원
        9. 필요에 따라 레오 복합지구 회의 참석
        10. 복합지구의 레오와 라이온의 협력 사업 1건에 대한 위원장직 수행

**제4조**

**복합지구 위원회**

1항. **자격증명위원회**. 복합지구 대회의 자격증명위원회는 현지구총재, 지구 제1 및 2부총재, 지구 사무총장, 재무총장으로 구성된다. 복합지구 의장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자격증명위원회는 개정판 로버트 의사규칙에서 규정한 권한을 갖고 임무를 수행한다.

2항. **복합지구 글로벌 액션팀**. 복합지구 의장이 위원장이 되며, 복합지구 글로벌 회원증강팀 코디네이터, 복합지구 글로벌 지도력개발팀 코디네이터, 복합지구 글로벌 봉사팀 코디네이터가 포함되며, 복합지구 마케팅위원장의 지원을 받는다. 복합지구 내에서 인도주의 봉사를 확장하고, 회원증강을 달성하고, 미래 지도자를 발굴하는데 도움이 될 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한다.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고 계획의 진행경과 및 계획에 도움이 될 사업에 대해 논의한다. 지역지도자 및 지구 글로벌 액션팀과 협력하여 성공 사례, 성과, 문제점을 공유한다.

3항. **복합지구 대회위원회**. 복합지구 총재협의회는 복합지구 대회위원회: 결의위원회, 지명위원회, 선거위원회, 헌장 및 부칙 위원회, 의사규칙 및 국제대회위원회를 임명하고, 위원장을 지명하고, 공석을 충원한다. 각 정지구는 각 위원회에 최소 1명의 대표를 파견한다. 이들 위원회는 총재협의회에서 부여한 임무를 수행한다.

4항. **기타 복합지구 위원회**. 총재협의회는 복합지구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하고 적합하다고 여겨지면 다른 위원회와 직책을 설치 및 임명할 수 있다.

**제5조**

**회의**

1항. **복합지구 회의**. 총재협의회는 지구총재들이 공식적으로 취임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정기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기타 회의를 개최한다. 복합지구 의장 또는 의장의 지시를 받은 사무총장은 각 총재협의회 회의에 대해 의장이 정하는 장소와 시간을 포함시킨 서면 소집통지서를 발송한다. 모든 회의 날짜는 의장이 정하는 첫 번째 회의를 제외하고는 총재협의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2항. **대체 회의 형식**. 복합지구의 정기 및/또는 임시회의는 화상회의 및/또는 웹 회의와 같은 대체회의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총재협의회의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다.

3항. **정족수**. 모든 회의의 정족수는 총재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 참석이다.

4항. **우편으로 처리되는 업무**. 총재협의회는 우편(편지, 이메일, 팩스 또는 전보)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나, 이러한 처리는 총재협의회 전체 구성원의 2/3의 서면 승인을 얻을 때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조치는 복합지구 의장 또는 동 협의회 구성원 3명이 제의할 수 있다.

**제6조**

**복합지구 대회**

1항. **대회 개최지 선정**. 복합지구 의장은 복합지구 대회 유치를 희망하는 장소로부터 서면 신청서를 접수한다. 본 신청서에는 복합지구 의장이 요구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개최지를 표결하는 대회 개최 30일 전까지 복합지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서 검토 절차 및 입찰서를 대회에 제출하는 절차, 입찰서가 총재협의회에 접수되지 않을 경우에 취할 조치는 총재협의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2항. **공식통고**. 총재협의회는 대회 개최 30일 이전에 장소, 날짜, 시간을 명시한 복합지구 연차대회의 서면 공식 통고를 공표해야 한다.

3항. **개최지 변경**. 총재협의회는 복합지구 대회에서 정한 대회 개최지를 정당한 사유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을 갖는다. 단, 대회 개최지는 복합지구 경계선 내에 위치해야 하며, 총재협의회, 복합지구, 정지구(들)는 어떠한 클럽이나 정지구에도 이로 인한 부담을 지울 수 없다. 장소 변경 공고는 연차대회 개최 60일 이전까지 복합지구의 각 클럽에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4항. **임원**. 총재협의회의 구성원은 복합지구 연차대회의 임원이 된다.

5항. **대회 진행순서**. 복합지구 총재협의회가 복합지구 대회의 진행순서를 결정하며, 모든 행사의 당일 순서도 같은 방식으로 정한다.

6항. **의사규칙 및 절차**. 본 헌장 및 부칙 또는 회의를 위해 채택한 의사규칙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은 한, 모든 대회, 총재협의회 회의, 복합지구 위원회 회의의 순서나 절차에 관한 사안은 개정판 로버트 의사규칙에 의거해 정한다.

7항. **운영요원**. 대회 운영요원 및 필요에 따른 보조 운영요원은 총재협의회가 임명한다.

8항. **공식보고서**. 복합지구 대회 종료 후 60일 이내에, 총재협의회 또는 그 지시에 따라 복합지구 사무총장이 국제협회 및 복합지구 내 각 클럽에 공식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9항. **정지구대회**. 복합지구 대회에 참석한 정지구의 등록된 대의원들의 회의는 동 정지구의 연차대회로 간주할 수 있다.

**제7조**

**복합지구 대회비**

1항. **대회 운영비 부과**. 복합지구 대회 등록비 대신 또는 이에 추가하여, 연간 복합지구 대회비 원을 복합지구 내 각 클럽회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각 클럽은 사전에 징수하고 납부해야 하며, 신생클럽과 재조직된 클럽은 제외한다. 다음과 같이 연 2회에 걸쳐: 7월 1일 ~ 12월 31일까지 회원 1인당 반기분 금액 원은 매년 9월 10일에; 1월 1일 ~ 6월 30일까지 회원 1인당 반기분 금액 원은 매년 3월 10일에 부과하며, 동 부과금의 청구서는 각각 9월 1일과 3월 1일 현재 클럽 회원명단을 기준으로 한다. 현 회계연도에 조직되거나 재조직된 클럽은 동 회계연도를 위한 부과금을 조직일 또는 재조직일 익월 1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징수하고 납부한다.

이 대회비는 각 지구 사무총장-재무총장이 각 정지구의 클럽에게서 수납해야 하며, 각 지구 사무총장-재무총장은 수납한 금액을 각 정지구 임원회에서 정한 은행이나 기타 보관소의 특별계좌에 예치하여 복합지구 의장의 지시가 있을 때 복합지구 사무총장-재무총장에게 납부한다. 징수한 대회비는 복합지구 대회의 비용을 부담하는데 전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복합지구 사무총장-재무총장이 발행, 서명하고 복합지구 의장이나 기타 공식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총재협의회 구성원이 공동서명한 복합지구 수표로만 지출할 수 있다.

2항. **잔여 운영비**. 어느 회계연도이든 모든 대회 운영 경비를 지급한 후에 남은 잔액은 동 대회비로 보관하여 향후의 대회 경비로 사용해야 하며, 지출할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간주하거나 그러한 경비 지급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한다.

3항. **등록비 징수**. 총재협의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복합지구 대회에 참석한 각 대의원, 대체대의원, 게스트에게서 총재협의회가 정한 회비를 징수하여 대회 식대와 공연의 실비를 충당할 수 있다.

**제8조**

**복합지구 운영비**

1항. **복합지구 수입**. 승인된 복합지구 사업을 위한 수입을 제공하고 복합지구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연간 복합지구 회비 원을 복합지구 내 각 클럽회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각 클럽은 사전에 징수하고 납부해야 하며, 연 2회에 걸쳐: 7월 1일 ~ 12월 31일까지 회원 1인당 반기분 금액 원은 매년 9월 10일에; 1월 1일 ~ 6월 30일까지 회원 1인당 반기분 금액 원은 매년 3월 10일에 부과하며, 동 부과금의 청구서는 각각 7월 1일과 1월 1일 현재 클럽 회원명단을 기준으로 한다. 동 회비는 복합지구 내 각 클럽에서 복합지구 사무총장/재무총장에게 납부해야 하며, 신생클럽과 재조직 클럽은 제외한다. 신생클럽과 재조직 클럽은 조직일 또는 재조직일 익월 1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징수하고 납부한다. 동 회비는 총재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복합지구 운영 경비로만 지출해야 한다. 회비의 지출은 복합지구 사무총장-재무총장이 발행, 서명하고 복합지구 의장이 공동서명한 수표로만 지출한다.

2항. **잔여 운영비**. 어느 회계연도이든 당해의 모든 복합지구 운영비를 지급한 후에 남은 잔액은 동 운영비로 보관하여 향후의 복합지구 운영비로 사용해야 하며, 지출할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간주하거나 그러한 경비 지급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제9조**

**기타**

1항. **보수**. 복합지구 사무총장-재무총장을 제외한 어떠한 임원도 공식 직책에서 본 복합지구에 제공한 모든 봉사에 대해 어떠한 보수도 받을 수 없으며, 복합지구 사무총장-재무총장의 보수는 있을 경우, 총재협의회에서 정한다.

2항. **회계연도**. 본 복합지구의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

3항. **감사**. 총재협의회는 연 1회 이상 복합지구의 회계장부 및 계좌를 감사한다.

**제10조**

**개정**

1항. **개정 절차**. 본 부칙은 헌장 및 부칙위원회에서 상정한 결의안으로 복합지구 대회에서만 개정할 수 있으며,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채택된다.

2항. **자동 개정**. 국제 헌장 및 부칙 개정안이 국제대회에서 통과되면, 본 복합지구 헌장 및 부칙에 영향을 주는 모든 개정내용은 대회 종료 시 본 헌장 및 부칙에서 자동으로 개정된다.

3항. **공고**. 연차대회 30일 전까지 개정안이 동 대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이라는 공고와 함께, 개정안을 정기 우편이나 전자 방식으로 각 클럽에 공표하지 않는 한, 어떠한 개정안도 공표하거나 표결할 수 없다.

4항. **발효일**. 개정안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각 개정안은 이를 채택한 대회 종료 시 효력이 발생한다.

**첨부 A**

**의사규칙 견본**

***본 의사규칙 견본은 가이드라인이며, 총재협의회에서 수정 및 대회 대의원들이 채택할 수 있다.***

**\_\_\_\_\_ 복합지구 대회**

**제1규정**. 복합지구 대회의 의사규칙은 복합지구 총재협의회에서 정한다. 변경할 수 없는 등록 및 자격증명 시간을 제외하고, 공고된 의사규칙의 변경은 성원이 된 모든 회의에 참석한 자격증명을 마친 대의원 3/4의 찬성으로만 가능하다.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자격증명을 마친 대의원의 과반수를 정족수로 한다.

**제2규정**. 국제 헌장 및 부칙, 복합지구 헌장 및 부칙, 국가의 관습과 관행 또는 이러한 규칙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순서와 절차에 관한 모든 사안은 로버트 의사규칙을 따른다.

**제3규정**.

* 1. 자격증명 위원회는 위원장인 복합지구 의장, 현 지구총재, 지구 제1 및 2부총재, 지구 사무총장, 재무총장으로 구성된다. 자격증명 위원회의 기본 임무는 클럽 대의원의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다. 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격증명 위원회는 국가 관습 및 관행에서 수립된 또는 개정판 로버트 의사규칙에서 규정한 권한을 갖고 임무를 수행한다.
  2. 등록 및 대의원 자격증명은 \_\_\_\_월 \_\_\_\_일 \_\_\_\_시부터 \_\_\_\_시까지 실시한다.
  3. 자격을 증명한 대의원 수를 자격증명 종료 시간 및 투표 시작 전에 공고해야 한다.

**제4규정**.

* 1.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대회 개최 60일 이전에 복합지구 의장이 3인으로 구성된 지명위원회를 임명하고 위원장을 지명한다. 선거 5일 전까지 지명된 각 후보의 자격을 검토하고 후보자들의 적격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위원회의 책임이다.
  2. 후보자는 지명위원회의 최종 보고서 발표 이전에 언제든지 입후보를 철회할 수 있다.

**제5규정**. 대의원 및 대체대의원 교체.

* 1. 이미 자격증명을 완료한 대의원 및/또는 대체대의원을 교체하려면, 교체 대의원은 교체하려는 회원에게 발급된 대의원 자격증명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2. 투표 당일, 정식 자격증명을 받은 대체대의원은 동일한 라이온스 클럽의 정식 자격증명을 받은 대의원을 대신하여 투표용지를 받고 투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표요원이 해당클럽의 대의원 자격에 대체가 이루어졌음을 자격증명 기록에 표시할 때, 대체대의원 자격증명 확인서 사본과 자격증명 받은 대의원의 자격증명 확인서 사본을 투표 요원에게 제시해야 한다. 자격증명을 받지 않은 대체대의원은 자격증명을 받거나 또는 받지 않은 대의원을 대체할 수 없다.

**제6규정**.

* 1. 대회 이전에 복합지구 의장은 3명으로 구성된 선거위원회를 임명하고 위원장을 지명한다. 정식으로 지명된 각 후보자는 소속 클럽을 통해 1명의 참관인을 지명할 권한을 갖는다. 참관인은 선거과정만 감독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할 수 없다.
  2. 선거위원회는 선거 자료 준비, 투표 일람표, 개별 투표용지의 유효성 관련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이 있다.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갖는다.
  3. 선거위원회는 선거 종합 결과보고서를 준비해야 하며, 보고서에는 선거일, 시간과 장소; 후보자 별 구체적 득표 결과; 각 위원회 위원과 참관인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구총재, 복합지구 의장, 모든 후보자에게 위원회 보고서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제7규정**. 투표.

* 1. 투표는 사전에 결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실시한다.
  2. 투표용지를 받으려면 대의원은 투표 요원에게 본인의 자격증명 확인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다. 확인이 완료되면 대의원은 투표 용지를 발급받는다.
  3. 투표자는 본인이 선택한 후보자명 옆의 적절한 위치에 기표하여 투표해야 한다. 적절한 위치에 기표해야만 유효표로 인정된다. 안건에서 채우도록 명시한 임원 수보다 더 많이 기표한 투표지는 해당 안건에 대해 무효로 선언된다.
  4. 제3부회장 및 국제이사로 추천받기 위해서는 과반수 득표가 반드시 필요하다. 추천동의에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면 후보자는 추천받지 못한다.
  5. 다른 모든 후보자 선출에도 과반수 득표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 후보자가 선출되는데 필요한 표를 얻지 못할 경우, 본 항에 명시된 대로 한 후보자가 과반수를 득표할 때까지 추가 투표를 실시한다.

국제라이온스협회

**윤리강령**

*자기 직업에 긍지를 가지고 근면 성실하여 힘써 사회에 봉사한다.*

*부정한 이득을 배제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성공을 기도한다.*

*남을 해하지 아니하고 자기 직무에 충실히 임한다.*

*남을 의심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반성한다.*

*우의를 돈독히 하며 이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진정한 우정은 봉사활동의 실행 여부에 따른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진심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에 있다.*

*선량한 시민으로서 자기의 의무를 다하며 국가 민족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나의 시간, 노동 및 수단을 제공한다.*

*불행한 사람을 위로하고 약한 사람을 도와준다.*

*남을 비판하는데 조심하고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아니하며 모든 문제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추진한다.*